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이동우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3년 2월 28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3월 3일

3. 제안이유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소득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일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추가로 규정하여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소득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소득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 및 설치 허가 대상 시설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1조)

5. 검토내용

○ 본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이나 설치 허가 대상 시

설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조례 시행 당시에 충북은 소득기반시설 중 취수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도서관만을 허가 대상으로 하였으나, 6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와 타 시도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수준으로 허가 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4조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을 타 시도 수준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이 중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어린이집, 공원, 놀이터, 운동장, 주민자치센터, 공중화장실, 지역특산물판매장, LPG 소형저장 탱크, 주민복지회관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기타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23. 3. 8. ~ '23. 3. 1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이나 설치 허가 대상 시설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1

타 시도 조례 제정·운영 현황

□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충청북도('17)	부산광역시('18)	경기도('15)	경상남도('20)	경상북도('20)
소득 기반시설	취수시설	취수시설	취수시설	취수시설	취수시설
	-	-	실습·체험장	실습·체험장	실습·체험장
	-	-	-	-	버섯가공실
주민공동 이용시설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	운동장	운동장	운동장	운동장
	-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	주민복지회관	특산물판매장	특산물판매장	특산물판매장
	-	공원·놀이터	LPG저장탱크	LPG저장탱크	LPG저장탱크
	-	공동화장실	주민복지회관	주민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	어린이집	-	공원·놀이터	어린이집
	-	-	-	주민자치센터	-
	-	-	-	공동화장실	-
	-	-	-	어린이집	-
계	2종	9종	8종	13종	10종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5개 시·도에서 제정·운영 함

□ 조례 운영 현황

구분	시설명	충청북도	경기도	경상북도
소득 기반시설	취수시설	102	216	-
	실습·체험장	-	7	-
주민공동 이용시설	주민운동장	-	4	-
	특산물판매장	-	2	-
	주민복지회관	-	7	5
	공동화장실	-	-	2
	LPG저장탱크	-	26	-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허가사례 없음